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183
----------	-------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시민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대적 요구 확산
-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기능 (안 제5조)
 -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협의
 - 수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업무의 수탁 처리
 - 주민자치: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업무
- 주민자치회 구성 (안 제6조~제9조)
 - 위원정수: 20명 이상 50명 이하(자치회장 1명, 부회장 1명, 호선)
 - 위원자격: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등
 - 위원선정: 공개 추첨(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이수자)
- 주민자치회 운영 (안 제10조~제15조)
 -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자치계획안, 주민 참여예산 편성안 결정 등 권한 부여
 - 회 의: 정기회의(월 1회), 임시회의
 -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분과위원회 운영, 자치계획 구성 등

○ 주민자치회 위원 (안 제16조~제20조)

-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 정치적 중립
- 위원 임기: 2년(연임, 명예직)
- 해 축: 정치적 중립, 권한남용 금지, 사익추구 금지 의무 위반 등

○ 시 등과의 관계 (안 제21조)

-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의 행정 및 재정지원 가능
-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 가능

○ 경과조치 (안 부칙 제3조)

- 최초 구성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제정조례안 : 붙임1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3

사전예고(결과) : 의견 있음(붙임4)

- 입법예고 : 2019. 7. 9. ~ 2019. 7. 29.(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행안부 표준조례안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붙임 1 >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안산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시범동으로 선정된 동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로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및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주민총회 안건 상정,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제2호의 위원이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능력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각각 5명 이내의 자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자로 선정하되, 그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하되, 동장은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의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자체 재원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을 통하여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② 주민총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안건은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사전투표에 참여한 주민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자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관련사항을 각 위원과 동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주민자치회 참여를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장 시 등과의 관계

제21조(시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시가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해당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시범동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시범동으로 선정된 각 동에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안산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그 동에 구성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시범동으로 선정된 동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의 정관·재산 등을 각각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시범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진영선 (행정 3445)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183호
----------	---------

제안년월일 : 2019. 9. 2.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우리 시 여건과 맞지 않는 주민자치회 지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 주민자치회 정수를 적정인원으로 조정 하며, 주민자치회위원 선정의 개방성을 확대하고자 기관.단체 등의 추천 위원수를 낮추고, 위원의 기본교육과정 이수 시간을 상향 조정 함.
- 운영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

□ 주요골자

- 주민자치회 지회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
- 주민자치회 정수를 30명으로 조정 (안 제6조)
- 기관.단체 등의 추천 위원수가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최소 이수시간을 8시간으로 상향 조정(안 제8조)
- 사무국의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0조)
- 자구를 조문에 맞게 정비 (안 제15조)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을 삭제 한다.

안 제6조 중 “50명” 을 “30명” 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분의 3을” 을 “10분의 2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시간” 을 “8시간”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간사 또는 사무국)” 을 “(간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를 “선임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를 “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기존의 제4항) 중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 를 “자원봉사자” 로 한다.

제15조 중 “1이상의” 를 “1이상”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4조(설치 등)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p> <p>1. 도서 및 벽지 지역</p> <p>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p> <p>3.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p>	<p>제4조(설치 등) ① ~ ②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p>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p>	<p>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p> <p style="text-align: center;">----- 30명 -----</p>
<p>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제2호의 위원이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능 시장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이수한 것을 의미한다.</p> <p>③ ~ ⑨ (생략)</p>	<p>제8조(위원의 선정) ① -----</p> <p>-----</p> <p>-----</p> <p>-----</p> <p>-----</p> <p>----- 10분의 2를 -----</p> <p>-----</p> <p>1. ~ 2. (원안과 같음)</p> <p>② -----</p> <p>-----</p> <p>----- 8시간 -----</p> <p>-----</p> <p>③ ~ ⑨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정안
<p>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자치회장은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자체 재원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간사) ① ----- 선임 ----- 하여 ----- -----</p> <p>② ----- 할 수 있다.</p> <p>< 삭 제 ></p> <p>③ ----- - 자원봉사자 ----- ----- -----</p>
<p>제15조(운영) ① (생 략)</p> <p>②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자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p>	<p>제15조(운영) ① (원안과 같음)</p> <p>② ----- ----- ----- ----- -----1이상이 ----- -----</p>